
2025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모집요강



목 차



- ①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안내
- ② 서류제출 안내사항
- ③ 지원자 유의사항
- ④ 지원자격 및 전형 방법[정원 2%이내]
- ⑤ 지원자격 및 전형 방법[정원 무제한]
- ⑥ 사정기준
- ⑦ 면접고사 안내
- ⑧ Apostille 및 영사확인 안내
- ⑨ 인성관(기숙사) 안내사항
- ⑩ 등록금 현황
- ⑪ 기타 서류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안내

1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원서접수 기간	2024.7.8(월)~12(금)18:00까지	인터넷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진학어플라이]
서류제출	2024.7.8(월)~19(금)15:00까지	우편 및 방문	2024.7.19(금) 15: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지원자의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 이전에 구비하여 서류제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함 (아포스티유 확인서, 영사확인 서류 등 포함)			
면접대상자 발표 [해당학(부)과에 한함]	2024.8.2(금) 15:00	입학홈페이지 조회 http://ipsi.konyang.ac.kr	·본인수험번호 반드시 숙지 ·면접 안내사항 확인 필수 ·개별통보 없음
면접고사	2024.8.10(토) 09:30 ~	지원 모집단위 지정장소 [추후공지]	
최초합격자 발표	2024.8.14(수) 15:00	입학홈페이지 조회 http://ipsi.konyang.ac.kr	·본인수험번호 반드시 숙지 ·합격자 안내사항 확인 필수 ·개별통보 없음
최초합격자 등록	2024.12.16(월)~18(수) [3일간]	[예치금 납부] 농협 및 하나은행 전국지점	
충원합격자 발표	2024.12.26(목) 18:00까지		·입학정원 2%이내 전형만 해당 ·충원합격통보는 지원 학(부)과에서 유선으로 통보
충원합격자 등록기간	2024.12.27(금) 16:00까지		충원합격은 12.26(목) 18시까지 통보 ※ 12.27(금)은 등록만 가능
최종등록금 납부기간	2025.2.10(월)~12(수) [3일간]	[등록금 납부] 농협 및 하나은행 전국지점	16시 등록 마감

2 인터넷 접수

- 접수 홈페이지 : <http://www.jinhakapply.com>(진학어플라이)
 - 접수 기간 : 2024. 7. 8(월) ~ 12(금) 18:00까지
 - 원서작성 안내 사항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입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 앞 6자리는 본인의 생년월일, 뒤 7자리는 남성의 경우 '1' / 여성의 경우 '2'기입 후 나머지 번호는 모두 '0'으로 기입
- [예시] 1996년 8월 12일 남성 : 960812-1000000 / 1995년 10월 15일 여성 : 951015-2000000

3 원서접수비(수수료 5,000원 포함) : 75,000원(원서접수 25,000원/1단계 합격자 2단계(면접) 50,000원)

- 면접 미응시자 및 1단계 불합격자는 면접고사비 환불 예정
- 원서접수 결제 완료 후 수험번호가 생성이 되면 접수한 원서는 취소할 수 없음

4 전형료 환불

- 원서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음
- 단,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
- ※ 납입한 전형료는 대입전형료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당(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전형 안내, 회의), 경비(회의비, 업무위탁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비, 여비, 주차료, 시설 사용료)로 사용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함
- 입학전형료의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하여 반환함
 -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대학 직접 방문

서류제출 안내사항

※ 우리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출서류 목록 이외의 별도의 서류(포트폴리오, 연구실적 등)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1 입학정원 2%이내 전형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공 통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학생 모두 표기	
5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 학생 제출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부모, 학생 제출, [기타자료] 출력가능	
7	여권 사본	부모, 학생 제출	
8	재외국민등록등본	부모, 학생 제출	
9	우리학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인터넷 접수(진학사) 출력가능	
10	학력 및 지원 자격 기록표	인터넷 접수(진학사) 출력가능	
11	학력 및 지원 자격 계산표	입학처 홈페이지>공지사항 출력 및 작성하여 제출	
12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	해 당 자 필 수 서 류
13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	
14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5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해당자는 12번~15번 서류(해당자 필수서류) 중 1개 필수 제출			
16	제3국 수학인정서	모집요강 [기타자료] 출력가능	해 당 자
17	공인어학성적	학과별 해당자	

※ 부모가 이혼/사망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 추가로 제출

※ 자영업자의 경우 - 현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생의 해외중고교 재학기간과 일치하는 3년간 세금납부증명서 (보호자 성명 명기)를 제출

※ 공인어학성적(학과별 해당자만)은 원본 및 성적확인 가능해야 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관련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자격을 인정 할 수 있음

2 입학정원 무제한 전형

지원유형	제출서류	
	유형별	공통사항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	①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② 재외국민등록부등본(학생) ③ 전가족 가족관계증명서(등본)	① 우리대학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인터넷 접수 출력가능) ② 학력 및 지원 자격 기록표 (인터넷 접수 출력가능) ③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④ 초, 중, 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⑤ 초, 중, 고등학교 전과정 재학증명서 ⑥ 공인어학성적(학과별 해당자만) ⑦ 사실증명 발급신청 위임장(부, 모, 학생) (모집요강-기타양식 출력가능)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인)	①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② 전가족 가족관계증명서(등본) ③ 외국국적증명서(학생) (학생 :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등) ④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 거소증(F4비자) 대체가능 ⑤ 재정보증서류 ⑥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전 교육과정 이수자 (결혼이주민)	① 국적취득사실증명서 ② 전가족 가족관계증명서(등본) ③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①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② 전가족 가족관계증명서(등본) ③ 외국국적증명서(부, 모, 학생) (학생 :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등) ④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 거소증(F4비자) 대체가능 ⑤ 재정보증서류 ⑥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 부모가 이혼/사망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 추가로 제출

※ 재정보증서류(아래의 서류중 하나를 구비하여 제출)

- ① 재정보증인 연 소득증명서
- ② 예금잔고증명서(미화 18,000달러 이상 최소 1달 이상 예치), 환전 및 송금증명서
- ③ 재산세과세증명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제외한 기타 한국어능력시험은 인정불가

※ 공인어학성적(학과별 해당자만)은 원본 및 성적확인 가능해야 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관련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자격을 인정 할 수 있음

3 서류제출 방법

- 제출기간 : 전 모집단위 2024. 7. 8(월) ~ 7. 19(금)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해당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

- 제출주소 : (우) 35365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 죽헌정보관 L층 입학처
- *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용 봉투 표지**'를 출력, 봉투겉면에 부착 후 등기우편 발송
- * 직접 방문제출 가능

○ 제출 시 유의사항

- 공인외국어 성적(TOEIC, TOEFL, TEPS 등)은 **최근 2년 이내 (2022년 7월 8일~2024년 7월 12일 이전 성적 발표된 어학성적)**의 성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원본확인 및 성적확인**이 가능해야 함(온라인확인 성적도 가능)
※ 2024년 7월 12일은 시험일 기준이 아닌 성적 및 자격확인 일자 기준

[예시]

-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 해당 기관장 및 담당부서에서 원본 대조필(사본이 원본의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는 도장 및 서명 자료)이 필수
- 원본대조가 어려운 경우 우리대학 방문을 통해 가능
- 한글 및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공증을 받아 원본과 함께 제출
- 제출서류상의 성명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
- 외국에서 발행한 각종 공문서 및 공증 문서[외국 발급 서류 일체 : 영주권,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보호자의 경력(재직) 증명서,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서, 개인소득세 납부영수증 등]는 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함

구 분	제 출 방 법
아포스티유 협약국	확인서를 학교 소재국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문의처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02)2100-7600 / 교육부 대입제도과 044)203-6363

-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에는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추후 사실 확인에 제출서류 외에 서류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관련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지원자 유의사항

1 우리대학 지원서를 작성하여 결제가 완료되면 접수사실 취소 및 지원 사항 변경 등이 일체 불가합니다. 지원서 작성 후 결제 전까지는 원서사항 수정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결제가 완료된 후에 수시모집 6회 지원 초과가 아닌 이상 지원취소, 전형관련 서류 반환이 일체 불가합니다(접수내용 변경 및 취소는 불가능하며 본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복수지원 관련 안내

가. 수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에서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 취소처리 됩니다(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교육대학,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 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수시 6회 제한대상에서 제외됨

나.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4 이중등록 금지

- 가.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나.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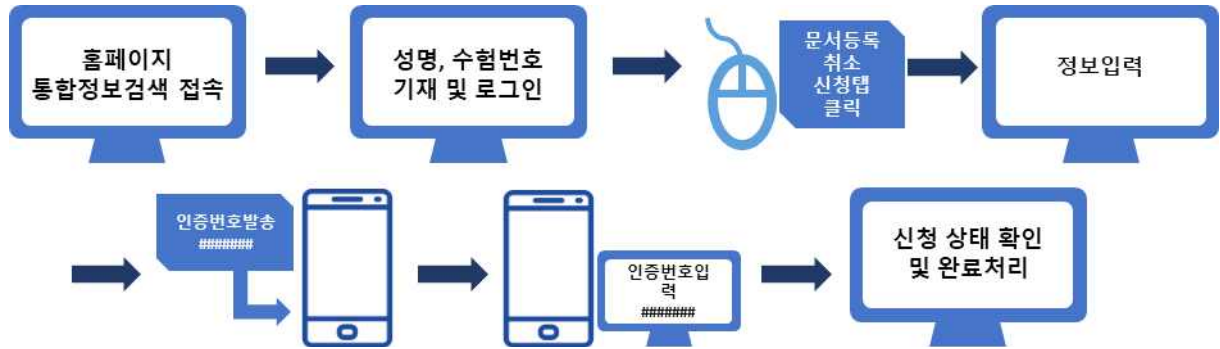
5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전국 대학 신입생의 지원, 합격, 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그 합격을 모두 취소하고 입학을 무효로 함

6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등록의사가 없는 합격자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7 수시모집 예비 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자들은 그 순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즉, 수시 및 정시 모집의 지원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8 합격자가 총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하며 등록포기 및 등록금(예치금) 환불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환불절차



※ 입학처 승인처리 후 대학 규정에 따라 지출 과정이 이루어지며 입금처리까지 하루 정도 소요됨

나.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다. 등록금(예치금) 환불은 신청 후 하루 정도 소요됨(단, 금요일 및 주말 신청 시 차주 월요일에 처리)

라. 등록포기자의 등록금 전액환불은 2025.02.28(금)까지이며, 이후 등록 포기자는 우리대학 학칙에 의거 환불됨

※ 추후 등록금(예치금) 환불에 대한 절차 변경이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 9 구비서류가 미비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기재상의 착오, 정정인이 지원자의 인장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처의 불분명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10 수시전형 모집에 있어서 우리대학 내 2개 이상의 학(부)과에 복수지원이 불가합니다.

- 11 고사 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고사시간에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2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입학처로 반드시 정정 요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된 연락처를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13 총원합격 발표 시 기재한 연락처가 불통인 경우 차순위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를 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간전에 항상 휴대폰을 소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항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총원합격 발표 및 등록 안내

- 총원합격(추가합격자)발표 및 등록기간 : 2024.12.19(목)~12.27(금) 16:00까지

[※ 총원합격 발표 마감은 12.26(목) 18:00까지]

- 발표방법 : 지원학과에서 유선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등록포기녹음 동시 진행)

※ 3회 이상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에 기회 부여

- 등록방법 : 합격자조회 → 문서등록 → 등록확인(합격자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14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입학지원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재학 중 이라 하더라도 입학을 취소합니다.
- 15 면접고사가 있는 모집단위에 지원한 수험생이 면접에 결시한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 16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면접 전형료를 납입 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하여 드립니다(천재지변, 질병 등).
- 17 입학 후 국내·외 전적학교의 학적조회와 거주사실 확인 등을 통해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 18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의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우리대학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19 입학 후 제반사항은 우리대학 학칙 및 규정에 따릅니다.
- 20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에서 정하여 시행합니다.
- 21 정원 2%이내 재외국민 전형은 후보합격자 충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충원은 지원자 중 후보 순위에 따라 충원합격 발표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 정원무제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합격자 발표시 합격과 불합격으로 발표되므로 별도의 충원합격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22 우리대학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에 대한 장학제도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명자료(출국 및 입국 제한 공문, 학교 안내 자료 등 반드시 제출)를 제출하여 지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및 입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및 전형방법 - 입학정원 2%이내

1 모집인원 : 총 30명 모집 [입학정원의 2% 이내이면서 학(부)과 정원의 10% 이내로 모집]

※ 단, 의학과는 입학정원의 5% 이내 모집

2 모집단위

○ 메디컬캠퍼스[대전]

구분	모집단위	구분	모집단위
의과대학	의학과	의과학계열	물리치료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의과학계열	작업치료학과	의료공과계열	의공학과
	병원경영학과		의료공간디자인학과
	안경광학과		제약생명공학과
	방사선학과		의료신소재학과
	치위생학과	AI·SW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 창의융합캠퍼스[논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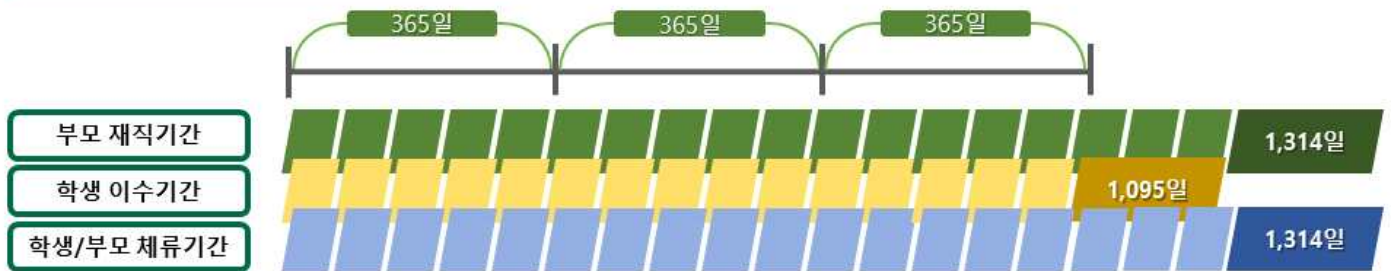
구분	모집단위	구분	모집단위
AI·SW융합대학	기업소프트웨어학부	재활복지계열	사회복지학과
창의융합계열	융합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임상약학과		스포츠의학과
	의약바이오학과		재활퍼스널트레이닝학과
재활복지계열	심리상담치료학과	글로벌경영계열	경영학부
	특수교육학과		호텔관광학과
			금융세무학부

3 지원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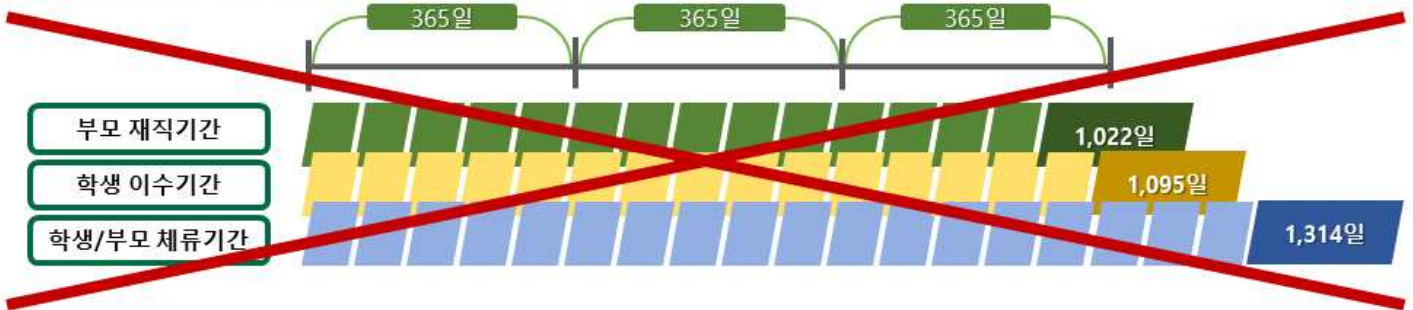
지원자격

1.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1,095일) 이상 이수한 자
 2. 부모는 학생 이수기간 내 3년(1,095일) 이상 재직한 자
 3. 학생의 경우 1년에 274일 이상, 부모의 경우 1년에 243일 이상 체류한 자
-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인정사례



불인정사례



□ 지원요건

국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 기준					
학생			보호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3년 (1,095일)	이수기간의 3/4 (1년 274일)이상	이수기간의 3/4 (1년 274일)이상	3년 (1,095일)	이수기간의 2/3 (1년 243일)이상	이수기간의 2/3 (1년 243일)이상

- ※ 학생 및 보호자 거주 및 체류기간은 재학기간 3년 중 각 1년마다 거주, 체류기간을 모두 만족해야만 지원 가능
- ※ 위 사항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함

□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 부모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학생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월반)는 중복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학기(월반)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중고과정 3년 이상이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6학기 이상, **3학기제의 경우** 중고과정 9학기 이상, **쿼터제의 경우** 중고과정 12학기 이상 등

- 학생의 지원 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 부모의 근무국가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함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유치원 과정 및 어학연수 목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연한은 인정하지 않음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지원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전형 세부방법

전형 방법	면접 대상자	모집 단위	최저학력기준 ※ New TEPS 반영(conversion table 활용)
1단계 : 서류 적·부 판정 2단계 : 면접 100%	5배수	의학과	의학과 TOEIC 850점, TOEFL 98점, TEPS 336점 이상 중 택 1 심리상담치료학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의공학과	
		의료공간디자인학과	
		제약생명공학과	
		의료신소재학과	
		인공지능학과	
		융합디자인학과	
		임상의약학과	
		의약바이오학과	
		심리상담치료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스포츠의학과	
		재활퍼스널트레이닝학과	
		경영학부	
		호텔관광학과	
		금융세무학부	
1단계 : TOEIC, TOEFL, TEPS 점수 중 택일 100% 2단계 : 면접 100%		간호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TOEIC 850점, TOEFL 98점, TEPS 336점 이상 중 택 1 작업치료학과, 병원경영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기업소프트웨어학부, 특수교육과 TOEIC 700점, TOEFL 80점, TEPS 264점 이상 중 택 1
		작업치료학과	
		병원경영학과	
		안경광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기업소프트웨어학부	
		특수교육과	
		사회복지학과	

※ 서류 적·부 판정이란? 지원 자격은 물론 해당 지원자의 고교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해당 지원학과의 수학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출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는 반영하지 않음

※ 최저학력기준은 지원 시 갖추어야할 최저한의 학력이며, 서류 적·부 판정 시 평가에 절대 반영하지 않음

※ 지원학(부)과에서 수학능력 및 학과의 교육 역량 평가 수준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서류 적·부 판정 및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지원 자격 및 전형방법 - 입학정원 무제한

1 모집인원 : 제한 없음

2 모집단위

○ 메디컬캠퍼스[대전]

구분	모집단위	구분	모집단위
의과대학	의학과	의과학계열	물리치료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의과학계열	작업치료학과	의료공과계열	의공학과
	병원경영학과		의료공간디자인학과
	방사선학과		제약생명공학과
	치위생학과		의료신소재학과
		AI·SW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 창의융합캠퍼스[논산]

구분	모집단위	구분	모집단위
AI·SW융합대학	기업소프트웨어학부	재활복지계열	심리상담치료학과
	스마트보안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창의융합계열	융합디자인학과	글로벌경영계열	시각디자인학과
	임상의약학과		경영학부
	의약바이오학과		호텔관광학과
	글로벌의료뷰티학과		금융세무학부

3 지원 자격

전형 유형	지원 자격	학력 요건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결혼 이주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기타 한국어능력시험 불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4 전 교육과정 / 결혼이주민 지원 자격 세부인정 기준

○ 자격기준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또는 해외학교 및 해당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9호
※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 해외 1개 국가에서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제	미인정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을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 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13학년제	12학년까지만 이수한 경우 : 10~12학년 13학년까지 이수한 경우 : 11~13학년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국외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인국인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

○ **자격기준**

-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 **12년 미만 학제 졸업인정 : 전 교육과정 이수자 지원자격에 준하여 인정여부 결정**

□ **전형 세부방법**

전 형 방 법	면접 대상자	모 집 단 위	최저학력기준
1단계 : 서류 적·부 판정 2단계 : 면접 적·부 판정	1단계 합격자 전원	의학과	의학과 TOEIC 850점, TOEFL 98점, TEPS 336점 이상 중 택 1 심리상담치료학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의공학과	
		의료공간디자인학과	
		제약생명공학과	
		의료신소재학과	
		인공지능학과	
		스마트보안학과	
		융합디자인학과	
		임상의약학과	
		의약바이오학과	
		글로벌의료뷰티학과	
		심리상담치료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경영학부	
		호텔관광학과	
		금융세무학부	
1단계 : TOEIC, TOEFL, TEPS 점수 중 택일 100% 2단계 : 면접 100%		간호학과	간호학과 TOEIC 850점, TOEFL 98점, TEPS 336점 이상 중 택 1 작업치료학과, 병원경영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기업소프트웨어학부 TOEIC 700점, TOEFL 80점, TEPS 264점 이상 중 택 1
		작업치료학과	
		병원경영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기업소프트웨어학부	

※ **서류 적·부 판정이란?** 지원 자격은 물론 해당 지원자의 고교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해당 **지원학과의 수학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출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는 반영하지 않음

※ **최저학력기준은 지원 시 갖추어야할 최저한의 학력이며,** 서류 적·부 판정 시 평가에 절대 반영하지 않음

※ 지원학(부)과에서 수학능력 및 학과의 교육 역량 평가 수준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서류 적·부 판정 및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사정기준

- 1 입학정원 2%이내 모집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학(부)과별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인원을 총점 성적순으로 사정 선발합니다.
[단, 의학과는 5% 이내 선발 2명으로 제한]
- 2 입학정원 제한 없는 전형은 입학정원과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습니다.
- 3 모집단위별 지원인원 및 등록인원이 미달되더라도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시 학과 교육 적응도, 학력수준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4 면접고사는 학(부)과별로 실시하며 면접위원은 3-6명으로 편성,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 점수를 산출합니다.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반올림]
- 5 서류미제출자 및 면접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6 동점자 사정기준은 1순위 면접점수 상위자, 2순위 공인어학성적 순(미제출자는 차순위 선발)으로 선발합니다.
- 7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모집단위별 등록인원이 미달되더라도 정시로 이월하여 모집하지 않습니다.

면접고사 안내

1 면접일시 : 2024 8. 10(토) 09:30 ~

- 2 면접방법 : 1개 면접실 기준 2-3명 면접위원이 수험생 1~3명을 면접(학과에 따라 다수 면접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과의 지침에 따라 안내 예정)
- 3 면접항목 및 면접점수 반영방법

구 분	등 급	면접 항목(학과에 따라 각 영역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인성	발전가능성	전공적합성
정원 2% 이내	1	30	30	40
	2	27	27	36
	3	24	24	32
	4	21	21	28
	5	18	18	24
정원 제한 없음	적	1. 면접위원이 항목 및 평가요소별로 각각 적합/부적합 판정 2. 모든 면접위원이 적합 판정시 합격		
	부			

※ 모든 면접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 반영]

- 4 면접기출문제 :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ipsi.konyang.ac.kr>]
- 5 면접 준비물 : 신분증, 수험표

Apostille 및 영사확인 관련 안내

1 해외학교 학력검증 확인 서류 제출 안내

지원자는 해외 (초)·중·고교 발행 졸업 및 성적(재학)증명 서류에 대해 아래 사항을 필수로 확인받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 발행 서류는 영사확인이 불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 서류 [(초)·중·고교 졸업 및 성적 증명] 또는 주재국 한국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서류 [(초)·중·고교 졸업 및 성적 증명]

2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관련 참고사항

가. 아포스티유 협약

- 1)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07. 7. 14부 우리나라에 발효)
- 2) 협약 가입국 간 공문서의 원활한 상호 인증을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함
- 3) 아포스티유 확인이 된 협약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
- 4)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등 신청 시 첨부 서류 중 영사확인을 요건으로 하는 제출서류는 기존 영사확인(비체약국)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문서도 인정 (출입국심사과-8354, '07. 8. 13)

나.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홈페이지(www.hcch.net)의 Apostille Section에서 국가별 관련기관 정보 등의 최신자료 조회 가능

3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절차(www.apostille.go.kr)

가. 공문서 (국·공립학교 등)



나. 사문서 (사립학교)



※ 사문서의 경우 해당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면 아포스티유 확인 가능

4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 현황 (2024. 01. 11기준 / 128개 국가 및 지역)

지 역	가 입 국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아일랜드(쿡군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루지아/조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인성관(기숙사) 안내사항

1. 입사 자격 및 신청 방법

- 가. 입사 자격 : 신입생 희망자의 경우 **우선 선발** [추가모집 제외]
 나. 신청 방법 : 기숙사(인성관) 홈페이지(<https://insung.konyang.ac.kr>)

2. 기숙사 현황 : 7개 학사

캠퍼스	학사	대상	호실형태	호실 수	규모
창의융합 캠퍼스 (논산)	봉소학사	남	2인실/4인실	109실	지하1층~지상5층
	현암학사	여	1인실/2인실	134실	지하1층~지상5층
	반야학사	남	1인실/2인실	65실	지하1층~지상4층
	구연학사	여	1인실/2인실	124실	지하1층~지상5층
메디컬 캠퍼스 (대전)	담곡학사	남	1인실/2인실	186실	지하1층~지상16층
	청림학사	남,여	2인실/3인실	231실	지하1층~지상16층
	간호학사	여	2인실/3인실	200실	지상8층~지상16층

- 2024년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음

3. 기숙사(인성관) 문의

- 가. 창의융합캠퍼스(논산) 기숙사 행정실: 041-730-5169, 5170
 나. 메디컬캠퍼스(대전) 기숙사 행정실 : 042-600-1643, 1645

등록금 현황

※ 2024학년도 기준 등록금

구분	단과대학	모집단위	수업료(한학기 기준)
메디컬 캠퍼스 [대전]	의과대학	의학과	4,833,000
	간호대학	간호학과	3,533,000
	의과학계열	작업치료학과	3,533,000
		병원경영학과	2,918,000
		안경광학과	3,533,000
		방사선학과	3,533,000
		치위생학과	3,533,000
		물리치료학과	3,533,000
		응급구조학과	3,533,000
	의료공과계열	의공학과	3,683,000
		의료공간디자인학과	3,683,000
		제약생명공학과	3,683,000
		의료신소재학과	3,683,000
	AI·SW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3,683,000
창의융합 캠퍼스 [논산]	AI·SW융합대학	기업소프트웨어학부	3,683,000
		스마트보안학과	3,683,000
	창의융합계열	융합디자인학과	3,408,000
		임상의약학과	3,683,000
		의약바이오학과	3,683,000
		글로벌의료뷰티학과	3,683,000
	재활복지계열	특수교육과	3,407,000
		사회복지학과	2,918,000
		디지털콘텐츠학과	2,918,000
		시각디자인학과	2,918,000
		스포츠의학과	3,403,000
		재활퍼스널트레이닝학과	3,403,000
	글로벌경영계열	경영학부	2,918,000
		호텔관광학과	2,918,000
		금융세무학부	2,918,000

기타 양식

□ 사실증명 발급신청 위임장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19. 6. 11.>

(앞쪽)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Certification of Fact will be issued for free on the government website at www.gov.kr if you apply online. When visiting an office and applying in person, you only need to present your ID card, without having to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신청 (국민만 해당) This question is for Koreans only		☐ 포함 Yes ☐ 미포함 No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체류지 포함 여부 I want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Purpose)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출입국 사실 확인용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건양대학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Alien Registration No.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042-600-1658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건양대학교 입학 담당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Name **건양대학교 입학처**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City Office, District Office, Ward Office, Town Office, Township Office, Community Center 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mm×297mm[백상지(80 g / m²) 또는 중질지(80 g / m²)]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fill in below the shaded lines, check in [] brackets that apply

2. 법인 신청인의 경우 앞쪽 신청인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란에 연락 가능한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name of the person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 신청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아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75(3, 4)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Where the principal or legal representative is not capable of expressing consent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the benefit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if the spouse is deceased)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the principal alien has permanently left Korea: the employer of the principal alien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Creditors who intend to be issued or inspect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Those who is confirmed to receive favorable ruling in a trial o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financial companies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that need the Certificate to collect overdue debt, those i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in question (only whe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causes the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the original due date or maturity date has arrived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due date, etc.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interest of public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 shall submit his/her ID car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authorizing person's ID card (or its copy) attached.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ou may be subject to any punishment under the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alien registration or receive any relevant documents with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other person or sealed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is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issue.

기타 양식

□ 제3국 수학 사유서

수험번호		성명	(인)
지원학과(학부)			
전화번호		휴대전화	

※ 학생의 수학국가가 보호자의 근무국가와 상이할 경우 그 사유를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근무국가		학생 수학국가	
보호자의 해외근무기간		학생의 해외수학기간	

※ 특례기간에 해당하는 보호자의 근무국가와 학생의 수학국가가 복수일 경우 각각의 국가명과 국가에서의 수학기간을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국 수학 사유

기타 양식

□ 학력 및 지원 자격 계산표

- 홈페이지 계산표 출력 후 제출(체류일수 자동계산)

※ 양식다운로드 : 입학처 홈페이지 > 공지사항

<예시>

2024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 학력 및 지원자격 계산표

수험번호	123456789	지원학과(부)	건양학과	성명(본인)	김건양
------	-----------	---------	------	--------	-----

■ 지원학생 기재란(중등과정)

※ 외국에 체류한 순서대로 기입해주세요.(출입국사실증명서의 정확한 날짜를 기입해야 함)

해외 중등과정				체류기간			소재 국가	소재 도시
학교명	학년	학기	학기시작일	~부터	~까지	체류일수		
Suzhou Singapore International School	7	1	2011년 08월 16일	2011년 08월 12일	2011년 12월 22일	132일	싱가포르	Suzhou
						0일		
						0일		
						0일		
						0일		
		2	2012년 01월 16일	2011년 12월 29일	2012년 06월 20일	174일	싱가포르	Suzhou
						0일		
						0일		
						0일		
						0일		
합계						352일		
Suzhou Singapore International School	8	1	2012년 08월 16일	2012년 06월 27일	2013년 01월 16일	203일	싱가포르	Suzhou
						0일		
						0일		
						0일		
						0일		
		2	2013년 01월 16일	2013년 01월 16일	2013년 08월 16일	212일	싱가포르	Suzhou
						0일		
						0일		
						0일		
						0일		
합계						365일		
Suzhou Singapore International School	9	1	2013년 08월 16일	2013년 08월 16일	2014년 01월 16일	153일	싱가포르	Suzhou
						0일		
						0일		
						0일		
						0일		
			2014년 01월 16일	2014년 01월 16일	2014년 08월 16일	212일	싱가포르	Suzhou
						0일		
						0일		
						0일		
						0일		
합계						365일		
총 체류기간						1086일		

<예시>

■ 지원학생 기재란(고등과정)

※ 외국에 체류한 순서대로 기입해주세요.(출입국사실증명서의 정확한 날짜를 기입해야 함)

해외 고등과정				체류기간			소재 국가	소재 도시
학교명	학년	학기	학기시작일	~부터	~까지	체류일수		
Suzhou Singapore International School	10	1	2014년 08월 16일	2014년 08월 16일	2014년 12월 22일	128일	싱가포르	Suzhou
						0일		
						0일		
						0일		
						0일		
						0일		
		2	2015년 01월 16일	2015년 01월 05일	2015년 08월 16일	223일	싱가포르	Suzhou
						0일		
						0일		
						0일		
				0일				
합계						351일		
Suzhou Singapore International School	11	1	2015년 08월 16일	2015년 08월 16일	2016년 01월 16일	153일	싱가포르	Suzhou
						0일		
						0일		
						0일		
						0일		
						0일		
		2	2016년 01월 16일	2016년 01월 16일	2016년 07월 19일	185일	싱가포르	Suzhou
						0일		
						0일		
						0일		
				0일				
합계						340일		
Suzhou Singapore International School	12	1	2016년 08월 16일	2016년 08월 14일	2017년 01월 16일	155일	싱가포르	Suzhou
						0일		
						0일		
						0일		
						0일		
						0일		
		2	2017년 01월 16일	2017년 01월 16일	2017년 06월 12일	147일	싱가포르	Suzhou
						0일		
						0일		
						0일		
				0일				
합계						300일		
총 체류기간						991일		

<예시>

■ 부모 체류기간 기재란(부)

※ 외국에 체류한 순서대로 기입해주세요.(출입국사실증명서의 정확한 날짜를 기입해야 함)

부모 기재사항	학년	학기	학기시작일	체류기간			소재국가	소재도시
				~부터	~까지	체류일수		
성명:김건양 관계:부(父)	7	1	2011년 08월 16일	2011년 08월 12일	2012년 01월 16일	157일	싱가포르	Suzhou
		2	2012년 01월 16일	2012년 01월 16일	2012년 03월 12일	56일	싱가포르	Suzhou
				2012년 03월 15일	2012년 08월 16일	154일	싱가포르	Suzhou
합계						363일		
성명:김건양 관계:부(父)	8	1	2012년 08월 16일	2012년 08월 16일	2012년 11월 09일	85일	싱가포르	Suzhou
				2012년 11월 16일	2013년 01월 16일	61일	싱가포르	Suzhou
		2	2013년 01월 16일	2013년 01월 16일	2013년 02월 20일	35일	싱가포르	Suzhou
				2013년 02월 23일	2013년 06월 06일	103일	싱가포르	Suzhou
				2013년 06월 09일	2013년 08월 16일	68일	싱가포르	Suzhou
합계						352일		
성명:김건양 관계:부(父)	9	1	2013년 08월 16일	2013년 08월 16일	2013년 09월 08일	23일	싱가포르	Suzhou
				2013년 09월 16일	2014년 01월 16일	122일	싱가포르	Suzhou
		2	2014년 01월 16일	2014년 01월 16일	2014년 03월 28일	71일	싱가포르	Suzhou
				2014년 04월 03일	2014년 07월 17일	105일	싱가포르	Suzhou
				2014년 07월 20일	2014년 08월 16일	27일	싱가포르	Suzhou
합계						348일		
성명:김건양 관계:부(父)	10	1	2014년 08월 16일	2014년 08월 16일	2014년 10월 17일	62일	싱가포르	Suzhou
				2014년 10월 21일	2014년 12월 18일	58일	싱가포르	Suzhou
				2015년 01월 05일	2015년 01월 16일	11일	싱가포르	Suzhou
		2	2015년 01월 16일	2015년 01월 16일	2015년 01월 25일	9일	싱가포르	Suzhou
				2015년 01월 30일	2015년 02월 26일	27일	싱가포르	Suzhou
				2015년 03월 04일	2015년 04월 25일	52일	싱가포르	Suzhou
				2015년 04월 30일	2015년 07월 26일	87일	싱가포르	Suzhou
				2015년 07월 30일	2015년 08월 16일	17일	싱가포르	Suzhou
합계						323일		
성명:김건양 관계:부(父)	11	1	2015년 08월 16일	2015년 08월 16일	2015년 10월 25일	70일	싱가포르	Suzhou
				2015년 10월 29일	2016년 01월 09일	72일	싱가포르	Suzhou
				2016년 01월 11일	2016년 01월 16일	5일	싱가포르	Suzhou
		2	2016년 01월 16일	2016년 01월 16일	2016년 01월 18일	2일	싱가포르	Suzhou
				2016년 01월 26일	2016년 03월 06일	40일	싱가포르	Suzhou
				2016년 03월 10일	2016년 04월 23일	44일	싱가포르	Suzhou
				2016년 04월 28일	2016년 07월 24일	87일	싱가포르	Suzhou
				2016년 08월 01일	2016년 08월 16일	15일	싱가포르	Suzhou
합계						335일		
성명:김건양 관계:부(父)	12	1	2016년 08월 16일	2016년 08월 16일	2016년 10월 23일	68일	싱가포르	Suzhou
				2016년 10월 28일	2017년 01월 16일	80일	싱가포르	Suzhou
		2	2017년 01월 16일	2017년 01월 24일	2017년 04월 02일	68일	싱가포르	Suzhou
				2017년 04월 07일	2017년 06월 20일	74일	싱가포르	Suzhou
합계						290일		
총 체류기간						948일		

2022년 07월 04일

지원자 : (성명) 김 건 양 (인)

<예시>

■ 부모 체류기간 기재란(모)

※ 외국에 체류한 순서대로 기입해주세요. (출입국사실증명서의 정확한 날짜를 기입해야 함)

부모 기재사항	학년	학기	학기시작일	체류기간			소재 국가	소재 도시
				~부터	~까지	체류일수		
성명:김건양 관계:모(母)	7	1	2011년 08월 16일	2011년 08월 12일	2011년 10월 09일	58일	싱가포르	Suzhou
				2011년 10월 13일	2011년 12월 22일	70일	싱가포르	Suzhou
				2011년 12월 29일	2012년 01월 16일	18일	싱가포르	Suzhou
		2	2012년 01월 16일	2012년 01월 16일	2012년 06월 20일	156일	싱가포르	Suzhou
				2012년 06월 27일	2012년 08월 16일	50일	싱가포르	Suzhou
합계						352일		
성명:김건양 관계:모(母)	8	1	2012년 08월 16일	2012년 08월 16일	2012년 10월 09일	54일	싱가포르	Suzhou
				2012년 10월 20일	2013년 01월 16일	88일	싱가포르	Suzhou
		2	2013년 01월 16일	2013년 01월 16일	2013년 02월 27일	42일	싱가포르	Suzhou
				2013년 03월 03일	2013년 04월 05일	33일	싱가포르	Suzhou
				2013년 04월 08일	2013년 05월 24일	46일	싱가포르	Suzhou
				2013년 05월 28일	2013년 06월 14일	17일	싱가포르	Suzhou
				2013년 07월 05일	2013년 08월 16일	42일	싱가포르	Suzhou
합계						322일		
성명:김건양 관계:모(母)	9	1	2013년 08월 16일	2013년 08월 16일	2013년 08월 23일	7일	싱가포르	Suzhou
				2013년 09월 03일	2013년 09월 19일	16일	싱가포르	Suzhou
				2013년 10월 08일	2014년 01월 09일	93일	싱가포르	Suzhou
		2	2014년 01월 16일	2014년 01월 29일	2014년 08월 15일	198일	싱가포르	Suzhou
합계						314일		
성명:김건양 관계:모(母)	10	1	2014년 08월 16일	2014년 08월 22일	2014년 10월 22일	61일	싱가포르	Suzhou
				2014년 10월 29일	2014년 12월 22일	54일	싱가포르	Suzhou
				2015년 01월 05일	2015년 01월 16일	11일	싱가포르	Suzhou
		2	2015년 01월 16일	2015년 01월 16일	2015년 03월 15일	58일	싱가포르	Suzhou
				2015년 03월 20일	2015년 07월 02일	104일	싱가포르	Suzhou
				2015년 07월 20일	2015년 08월 16일	27일	싱가포르	Suzhou
합계						315일		
성명:김건양 관계:모(母)	11	1	2015년 08월 16일	2015년 08월 16일	2015년 11월 07일	83일	싱가포르	Suzhou
				2015년 11월 19일	2016년 01월 09일	51일	싱가포르	Suzhou
				2016년 01월 15일	2016년 01월 16일	1일	싱가포르	Suzhou
		2	2016년 01월 16일	2016년 01월 16일	2016년 04월 17일	92일	싱가포르	Suzhou
				2016년 04월 14일	2016년 07월 05일	82일	싱가포르	Suzhou
				2016년 08월 14일	2016년 08월 16일	2일	싱가포르	Suzhou
합계						311일		
성명:김건양 관계:모(母)	12	1	2016년 08월 16일	2016년 08월 16일	2017년 01월 06일	143일	싱가포르	Suzhou
		2	2017년 01월 16일	2017년 01월 12일	2017년 06월 20일	159일	싱가포르	Suzhou
합계						302일		
총 체류기간						928일		

■ 부모 재직기간 기재란

※ 외국에 재직 한 순서대로 기입해 주세요. (재직증명서의 정확한 날짜를 기입해야 함)

부모 기재사항			체류기간			소재 국가	소재 도시
성명	학생과의 관계	직장명	~부터	~까지	체류일수		
김건양	부(父)	건양대학교	1995년 03월 01일	2017년 06월 20일	8147일	싱가포르	Suzhou
					0일		
					0일		
					0일		
					0일		
총 체류기간					8147일		

본 모집요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